



ESG정밀진단 컨설팅 최종보고서

2025

(주)하성씨앤아이 / 206-81-11220

2026.05.18

IBK기업은행 ESG컨설팅팀



ESG 정밀진단 컨설팅 종합



1. ESG정밀진단 컨설팅 종합

기업현황

(주)하성씨앤아이

평가 일자	2026-05-14	유효기간	2027-05-14
대표자	윤철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번호	206-81-11220	평가 산업군	방송/정보서비스업
법인 등록 번호	110111-1370545	주요 생산품	소프트웨어개발
자산 규모	10,745 백만원	매출액	14,662 백만원 (2025년)
상장 여부	비상장	근로자 수	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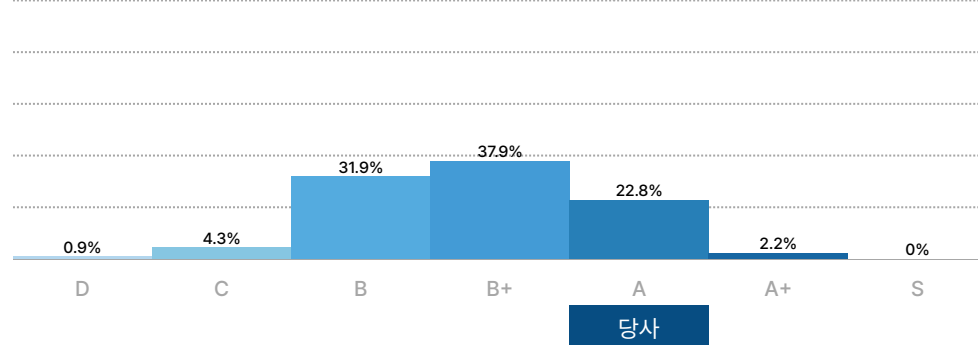
ESG정밀진단 종합 결과(등급)

A등급

D	C	B	B+	A	A+	S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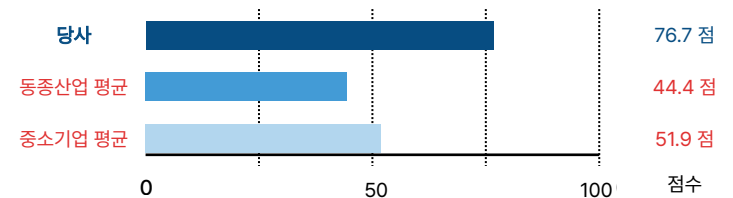
귀사는 ESG 경영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ESG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중소 기업 등급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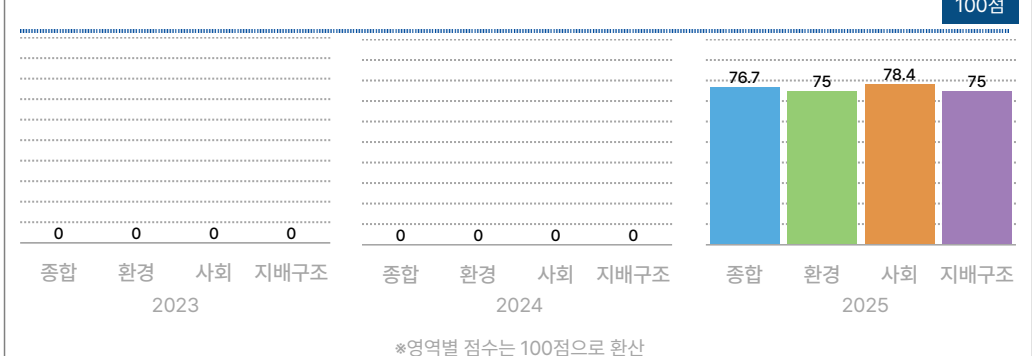


ESG정밀진단 종합 결과(점수)

76.7점



【 최근 3개년 ESG점수 현황 】



ESG 분야별 등급

환경 A 등급 75.0/100	
이슈	점수 (100점 만점)
환경경영 일반	75.0
온실가스 및 에너지	79.2
수자원	62.5

사회 A+ 등급 78.4/100	
이슈	점수 (100점 만점)
인권	95.0
근로조건	100.0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87.5
노사관계	100.0
안전보건	50.0
지역사회	50.0
협력사 및 공급망	0.0
정보보호	87.5

지배구조 A 등급 75.0/100	
이슈	점수 (100점 만점)
윤리경영 및 반부패	83.3
이해관계자 소통	50.0
지배구조 건전성	75.0

ESG 규제 대응 결과



2. ESG 규제 대응 수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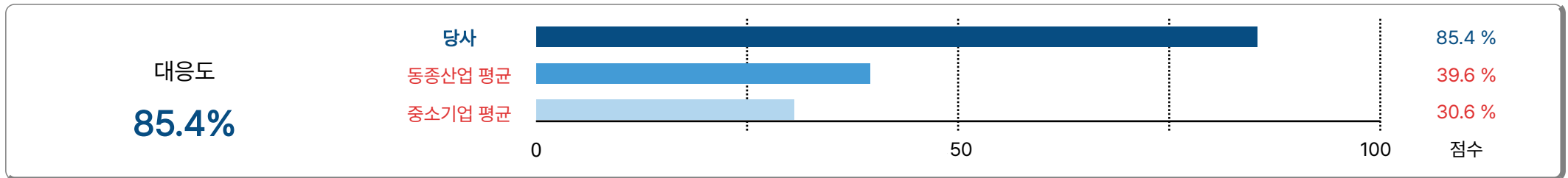
ESG 규제 대응 수준 평가란?

ESG 규제 대응 평가는 주요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SG 규제 대응 등급

등급	취약	미흡	보통	양호	우수
우수					귀사는 주요 ESG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행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규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SG 규제 대응도



ESG 규제별 리스크 대응도 상세

CSDDD부속서1	CSDDD부속서2	산림벌채규정 (EUDR)	EU 배터리규정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UFLP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청정경쟁법 (CCA)	분쟁광물규정	EU 강제노동제품 금지규정
보통 (9/16, 56.3%)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우수 (1/1, 100%)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우수 (1/1, 100%)

Good

Bad

Good

Bad

Good

Bad

ESG 규제별 리스크 대응

CSDDD부속서1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 및 금지 사항을 명시. 여기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아동 노동 금지, 강제 노동 금지, 차별 및 괴롭힘 금지 등이 포함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1] 생명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생명권을 보장하며, 기업의 자원, 시설 또는 인력을 보호하는 보안 요원이 통제의 부재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	N
[2]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의 금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해석에 따라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며, 기업 보안 요원의 행위로 인한 이러한 대우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	N
[3]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자유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	Y
[4] 개인의 사생활 등에 간섭과 금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의 해석에 따라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교환에 대한 자의적 간섭 및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금지	N
[5]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금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해석에 따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Y
[6]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11조의 해석에 따라 정의롭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하며, 공정한 임금,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및 노동시간을 합리적인 제한할 의무를 부과	Y
[7] 근로자가 사택 거주 시 적절한 주거공간 이용과, 근로 공간에서 적절한 식량, 의복, 식수, 위생환경 이용에 대한 제한 금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의 해석에 따라 노동자가 회사 제공 숙소에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와, 적절한 음식, 의복, 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Y
[8]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 해석에 따라 아동의 건강, 교육, 생활수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N
[9] 의무교육이 완료되는 연령 미만의 아동과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고용 금지	ILO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제4~8조의 해석에 따라 의무교육 미완료 또는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	N
[10] 18세 미만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협약(제182호) 제3조의 해석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의 가혹한 형태의 노동을 금지하며, 아동 매매, 인신매매, 강제 노동, 매춘, 불법 활동 등에의 이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	N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11] 강제적 노동 금지	ILO 강제노동 협약(제29호) 제2조의 제1, 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3항의 해석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부채 속박, 인신매매, 처벌 위협을 통한 비자발적 노동 등을 방지함.	Y
[12] 노예제 및 노예 매매 금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의 해석에 따라 모든 형태의 노예제 및 노예매매, 경제적 또는 성적 착취, 인신매매를 금지	Y
[1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단결 및 단체 교섭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제22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해석에 따라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단결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부당한 간섭과 차별을 금지	Y
[14] 고용에 있어 차별 대우 금지	ILO 동일가치 동일보수 협약(제100호) 제2조, 제3조, ILO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협약(제111호) 제1조, 제2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해석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보수 및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	N
[15] 유해한 토양 변화, 수질 또는 대기오염, 유해한 배출이나 과도한 물 소비 또는 삼림벌채 등 측정 가능한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제12조의 해석에 따라 식량, 물, 위생 시설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	Y
[16]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개인, 집단 및 공동체의 권리 및 생계수단을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제27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제2조, 제11조의 해석에 따라 토지, 산림, 수역의 불법적 탈취를 금지하며, 최저 생계수단과 자원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	Y

CSDDD부속서2

환경과 관련된 의무와 금지 사항을 다루며, 생물다양성 보호, 수은 첨가제품 사용 및 수출입 제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제한, 오존층 보호, 폐기물 수출입 제한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1]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피하거나 최소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조 (b)호 및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의 해석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취급, 운송, 사용, 이전 및 방출을 금지하며, 유전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의무를 부과	미대상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표본의 무허가 수입, 수출, 재수출, 해상으로부터의 반입 금지	멸종위기종(CITES) 협약 제3조, 제4조, 제5조의 해석에 따라 부속서 I~III에 포함된 모든 야생 동식물 표본을 허가 없이 수입, 수출, 재수출하거나 해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	미대상
[3] 수은 제품 제조, 수입, 수출 금지	미나마타 협약 제4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부속서 A 파트 I에 열거된 수은 첨가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수출을 금지	미대상
[4] 제조 공정에서의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 사용 금지	미나마타 협약 제5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부속서 B 파트 I에 열거된 제조 공정에서 단계적 폐지일 이후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을 금지	미대상
[5] 수은 폐기물의 불법처리 금지	미나마타 협약 제11조 제3항 및 EU 규정 (EU) 2017/852 제13조의 해석에 따라 수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금지	미대상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및 사용 금지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 및 EU 규정 (EU) 2019/1021 제3조 제1항 (a)(i)호의 해석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	미대상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폐기물의 불법적인 취급, 수집, 보관 및 폐기의 금지	스톡홀름 협약 제6조 제1항 (d)(i), (d)(ii) 및 EU 규정 (EU) 2019/1021 제7조의 해석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폐기물의 불법적인 취급, 수집, 보관 및 처리를 금지	미대상
[8] 특정 유해화학 물질 및 농약의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및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따른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III,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b), 제11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며, 사전 정보 동의(PIC) 절차에 따라 협약의 수출입 당사국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	미대상
[9] 오존층 파괴 물질의 불법적인 수출입 금지	몬트리올 의정서 제4B조와 관련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부속서 A, B, C, E의 규제 물질)의 불법적인 생산, 소비, 수입 및 수출을 금지	미대상
[10] 유해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수출 금지	바젤 협약 제1조의 제1, 2항, 제4조의 제1, 5, 8항 및 EU 규정 (EC) 1013/2006에 따라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의 관리와 수출을 금지	미대상
[11] 부속서 기재 국가에서 기재되지 않은 국가로의 유해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수출 금지	바젤 협약 제4A조와 EU 규정 (EC) 1013/2006 제34조, 제36조의 해석에 따라 부속서 VII 국가(OECD 회원국가)에서 부속서 VII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로 유해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	미대상
[12] 협약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유해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수입 금지	바젤 협약 제4조 제5항의 해석에 따라 협약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	미대상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13] 자연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의무	세계문화유산협약 제5조 (d)와 관련 법률의 해석에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의무를 부과	미대상
[14] 습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의무	람사르 협약 제4조 제1항과 관련 법률의 해석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의무를 부과	미대상
[15]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 의무	MARPOL 73/78 협약 부속서 I~V의 해석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 유독성 액체, 하수, 포장된 유해물질 및 쓰레기로 인한 불법적 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	미대상
[16] 투기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 방지, 감소 및 통제	UNCLOS 제210조와 관련 법률의 해석에 따라 투기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할 의무를 부과	미대상

산림벌채규정 (EUDR)	EU 시장에서 벌목 및 삼림벌채와 관련된 제품(목재, 콩, 팜유 등)의 공급망 추적성과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은 원산지 정보 제공과 불법 삼림벌채 방지를 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함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산림벌채규정 (EUDR)	■ 적용 대상 규제 품목(팜유, 대두, 목재, 코코아, 커피, 소, 고무)을 역내 시장에 수입하여 생산, 판매, 수출하는 역내기업 운영자 및 거래자(공급망 참여 주체) ■ 시행 현황 시행 예정 : 2025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 ■ 준수 사항 -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대두, 목재, 코코아, 커피, 소, 고무의 7개 제품군에 대한 EU 시장 출시, 유통, 판매, 역외 수출 금지 - 규제 품목 판매, 수출업자는 제품 및 원자재 지리정보, 생산지 주민 인권보호 등 요소, 부패방지법 준수 여부가 포함된 실사선언서 제출 ■ 미준수시 제재 EUDR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을 출시 또는 수출하거나 기타 EUDR을 위반한 기업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차단될 수 있으며,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 가능	미대상

EU 배터리규정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은 지속가능성 확보, 순환경제 촉진, 탄소발자국 감축, 책임있는 원자재 조달,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 강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한 규정으로, 기업은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 이 규정은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적용되며, EU 시장에 진입하거나 유통되는 배터리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함. 특히 배터리 유형별로 탄소발자국 산정 및 정보 제출, 재활용 원료의 최소 함량 요건 준수, 배터리에 사용되는 특정 원자재(코발트, 리튬, 니켈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가 핵심 요구사항임.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EU 배터리규정	■ 적용 대상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SLI 배터리(차량 조명, 점화, 시동용), 전기자전거 등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 시행 현황 시행 중 : 2024년 2월 18일부터 ■ 준수 사항 -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LMT 배터리에 적용됨. 탄소발자국 선언서 제출, 탄소발자국 성능등급 표시, 기술문서 준비 요구 -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2028년 8월 18일부터 또는 관련 위임법률이 발효된 후 24개월부터 적용됨. 활성물질에 코발트, 납, 리튬 또는 니켈을 포함한 배터리에 대해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문서화 요구 - 라벨링 및 표시 의무화: 배터리에 대한 특정 정보를 표시하는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 2025년 8월 18일까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통일된 사양을 설정하는 이행법률이 채택될 예정 -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화: 공급망 업스트림에 대해 실사의무가 부여되며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단,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매출 4천만 유로 미만 기업 제외) -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회원국은 폐배터리 회수 및 수거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수립. 생산자는 수거 목표 준수를 문서화 요구 ■ 미준수시 제재 각 회원국이 결정	미대상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으로, 기업은 공급망내 강제노동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함. 신장 위구르 지역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수용소 수감, 감시, 종교 탄압, 노동 강제 동원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지속 제기된 지역으로, 미국 정부는 이를 조직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강제 노동 체계로 간주함.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공급망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추정되며, 수입 기업은 명확한 반증 자료 없이는 미국 시장 통관이 제한됨. 기업은 공급망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인, 생산지 추적, 관련 문서 준비 등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갖추어야 함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 적용 대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 (규제품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전자자동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 산업용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법인/단체 리스트(UFLPA Entity list)에 기재됨.) ■ 시행 현황 시행 중 : 2022년 6월 21일부터 ■ 준수 사항 -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재소자 노동, 계약 노동, 아동노동 등을 포함한 비자발적 노동으로 정의하며, 신장 위구르자치구 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엄격한 공급망 실사와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 ■ 미준수시 제재 - 제품 수입 금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 - 자산 거래 금지: 강제노동과 관련된 외국인은 미국 내 자산 거래가 금지 - 입국 및 비자 제한: 강제노동과 관련된 외국인은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이 제한	Y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탄소집약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과 EU 역내 생산 제품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짐.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군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2023년 10월부터는 이행기간이 시작되어,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분기별로 EU에 보고해야 함. 이 기간에는 인증서 구매 등 실제 비용 납부 의무는 없으나, 2026년부터는 산정된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입해 탄소비용을 납부해야 함.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에너지원, 공정 방식, 원자재의 출처 등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므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배출 정보 파악과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함.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EU 수입업체나 거래처를 통해 탄소배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요구됨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적용 대상 -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CBAM 법 부속서 I에 CN 코드로 열거) - 적용 국가: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를 제외한 모든 역외국 ■ 시행 현황 시행 예정 :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 ■ 준수 사항 - 전환 기간('23.10.1~'25.12.31): 수출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Scope 1&2)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고, EU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게 제출 - 확정 기간('26.1.1~): 수출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연 1회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의무가 생기며, EU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입 및 제출 요구 ■ 미준수시 제재 -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 부과 -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 적용 - 심사 결과 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내 무역활동의 일시적 제한, 투자 제한, 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강력한 시정조치 가능	미대상

청정경쟁법 (CCA)

미국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
이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미 의회 내에서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 다만 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과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CBAM과 마찬가지로, CCA 역시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이 자국 저탄소 생산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지향함 향후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수출 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이는 탄소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급망 전반의 배출관리 역량 확보가 무역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적용하게 됨을 의미함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청정경쟁법 (CCA)	■ 적용 대상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화석 연료, 석유정제, 석유 화학, 비료, 수소, 아디프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펄프 및 종이, 에탄올)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 시행 현황 시행 예정 : 2025년부터 (법안 미통과 상태, 시행 일시 미정) ■ 준수 사항 수입업체가 원산지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 차이에 해당하는 톤당 배출량에 대한 비용 지불 -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원산지 국가 경제의 배출 집약도 수준과 미국 경제 배출량 집약도 수준 비율 -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원산지 국가 산업 평균 배출 집약도 대 미국 해당 산업 배출 집약도 비율	미대상

분쟁광물규정

EU의 분쟁광물 규정(Regulation (EU) 2017/821)은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통칭 3TG)과 같은 광물이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되어 무장세력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광물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임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EU 역내로 3TG 광물을 수입하는 정련소, 제련소, 특정 수입업체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과함, 실사는 OECD의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수행되어야 함

기업은 광물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출처와 거래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이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위험이 식별될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와 이행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이 규정은 EU 역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광물을 수입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완제품 제조업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공급망 전반에 간접적인 준수 요구가 발생함.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공급업체와 제련소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화 및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EU 시장 진입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함

규제명	규제 내용	대응
분쟁광물규정	■ 적용 대상 EU로 3TG(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광물을 제조 및 반입하는 EU 수입업자 ■ 시행 현황 시행 중 : 2021년 1월 1일부터 ■ 준수 사항 - OECD 책임광물 기준 준수 및 주석, 텅스텐, 금 등 모든 광물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 수입업자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 분쟁광물에 대한 수입 정보 제공 의무 - 분쟁광물 외에도 코발트, 구리, 납, 니켈, 아연 등 실사 기준 공개 ■ 미준수시 제재 시정명령, 추가 현장 검사	미대상

EU 강제노동제품금지규정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내 유통, 수입,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품이 생산된 지역이나 국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규범임

이 규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2년 최초 제안하였으며, 2024년 3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 정치적 합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진행 중임. 관보 게재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EU 당국은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 할 수 있으며, 강제노동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EU 내 판매·유통·수입·수출이 모두 금지되고, 재고는 회수 또는 폐기 조치됨

이 규정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기반으로 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이 확인된 특정 지역만을 지정해 금지하는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달리,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강제노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 리스크가 있는 지역 및 활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적용 규제	규제 내용	대응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	■ 적용 대상 원산지 및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 - 경제 운영자: 유럽 연합(EU) 시장에 제품을 배치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경제 운영자 - 수출업자: EU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또는 기타 원격 판매 수단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시행 현황 시행 예정 : 2027년부터 (발효일로부터 3년 후) ■ 준수 사항 - 조사: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은 조사되며, 상품 종류 구분없이 전 공급망 내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해 EU 역내 유통 금지 - 고위험 지역: 강제 노동이 국가적으로 강제되는 고위험 지역에서 온 제품은 특별히 심층 조사 - 재출시 조건: 강제 노동이 제거된 경우, 제품은 다시 시장에 출시 가능 ■ 미준수시 제재 - 제품 철수: 강제 노동이 확인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철수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은 기부, 재활용 또는 파기 - 벌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을 부과 - 세관 압류: 비준수 제품은 세관에서 압류될 수 있으며, 이후 기부, 재활용 또는 파기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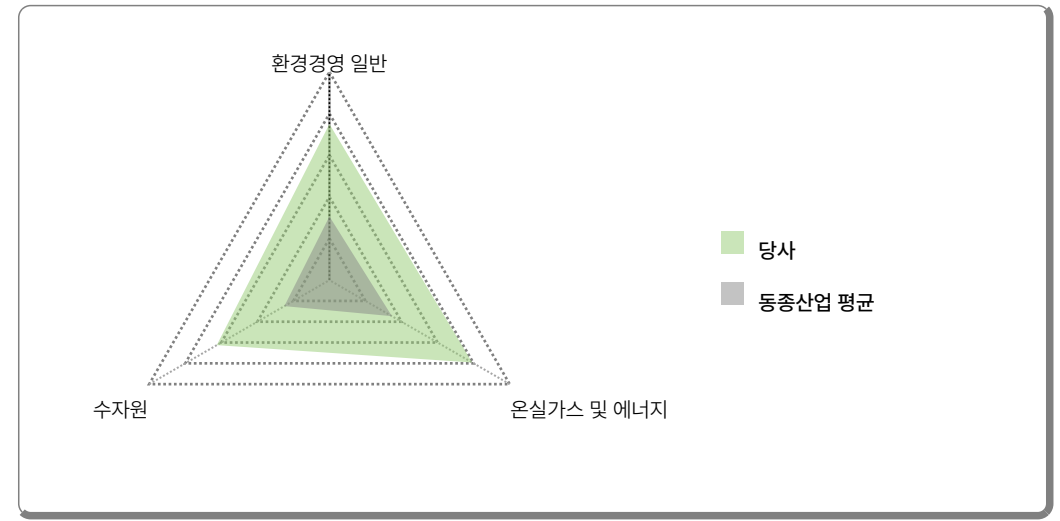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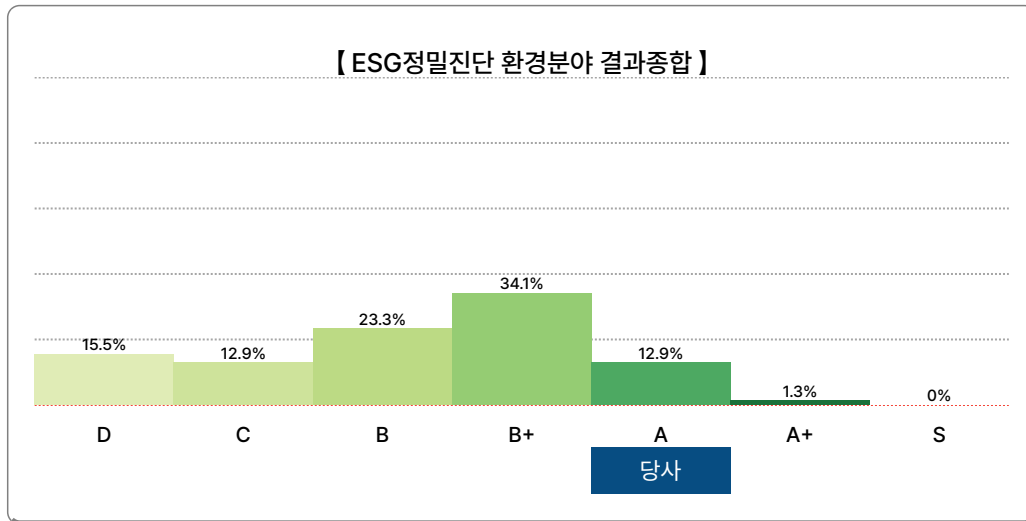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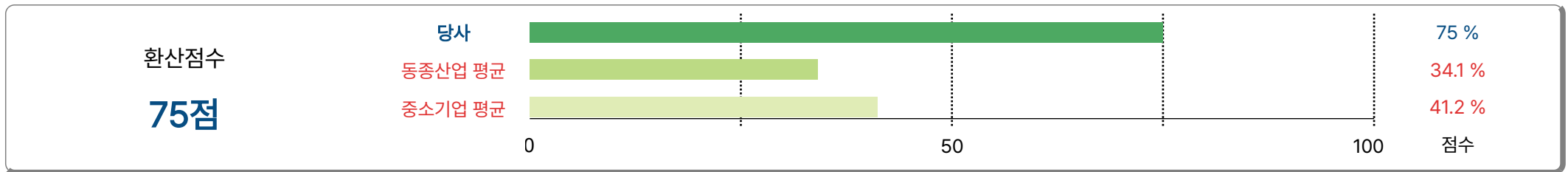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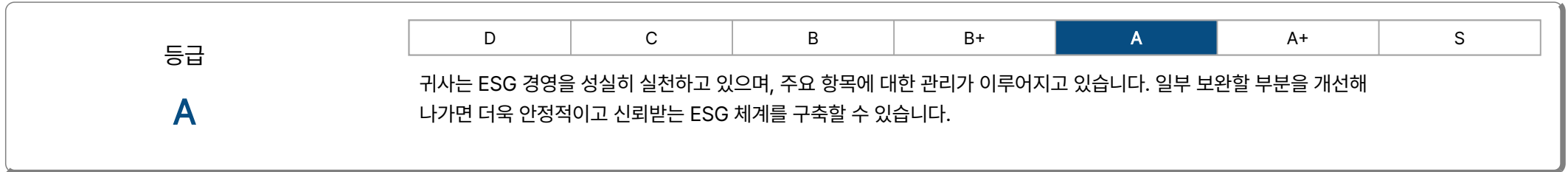
ESG 분야별 평가결과



3. ESG 분야별 평가 결과

■ 환경(ENVIRONMENT)

■ 평가 종합



■ 이슈별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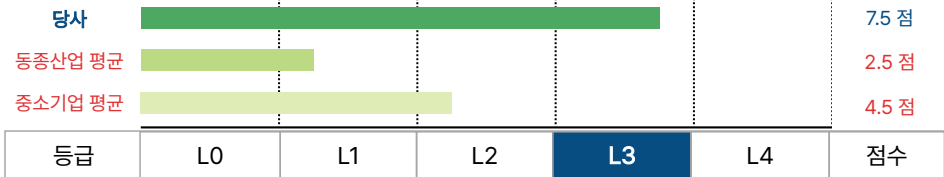
이슈	이슈별 주요 내용	Low ← 등급 → High	점수 (100점)	개선필요지표
환경경영 일반	전반적인 환경 경영 정책 수립 및 경영 활동 관리 위한 제도와 활동	 당사 ▼	75.0	
온실가스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 보장 위한 정책·실행 체계	 당사 ▼	79.2	
수자원	용수 사용 효율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당사 ▼	62.5	용수 관리

■ 환경분야 이슈별 상세 평가

이슈명 : 환경경영 일반

● 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 실천 의지를 담은 정책, KPI 수립 여부, 목표 설정 및 보상 체계 보유 여부 등을 통해 환경 성과 관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환경경영 정책 수립
환경경영 KPI 보유
환경경영 목표 수립
정기/수시 환경경영 성과 모니터링

[개선사항]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보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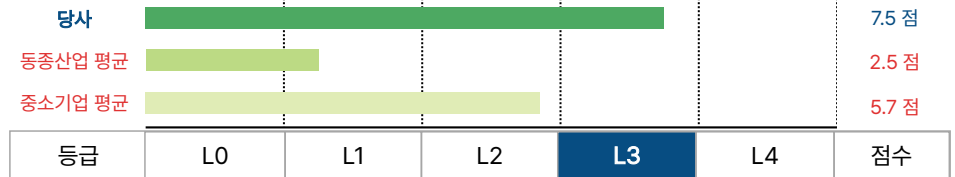
[추가의견]

환경경영 혹은 ESG전반에 대해 관련 KPI 설정 및 목표수립은 분야별로 다양화하고 구체적으로 설정(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환경개선활동 등으로 KPI 설정 및 목표수립을 확대)하시고, 환경경영 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및 ESG 경영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개인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연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 환경경영 조직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실무조직 및 효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환경경영 조직은 일반적으로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의미하나, 본 지표는 중소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겸직이 가능한 담당 조직을 인정하며 경영진에 보고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포함하여 정의



[양호사항]

환경 분야 실무 담당자 보유
전사 환경경영 총괄 담당자 보유
전사 환경경영 총괄 담당 조직 보유

[개선사항]

환경경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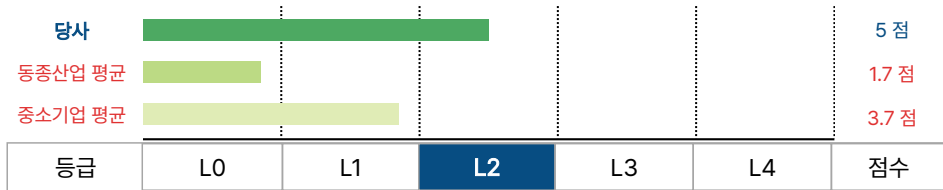
[추가의견]

환경경영 총괄 조직 운영과 더불어, 경영진/이사회가 환경경영의 운영 및 성과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검토하는 회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한것은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 하고 관련된 협의체 회의록, 경영회의 자료를 구비하는 등 환경경영 거버넌스 체계 도입을 권장 합니다.

이슈명 : 온실가스 및 에너지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정책, KPI, 목표/계획 수립, 감축 활동 실시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체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정책 보유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KPI 보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 실시

[개선사항]

단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목표/
계획 수립
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목표/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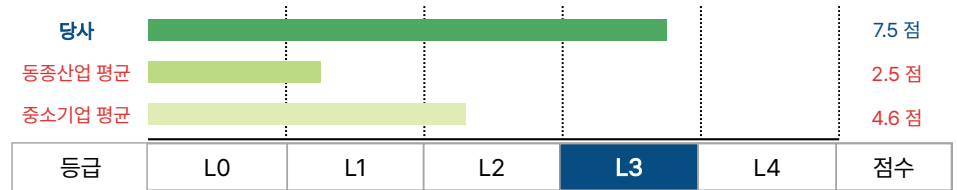
[추가의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정책, KPI 보유 및 감축 활동 실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제적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단기 및 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수립이 요구됩니다.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계획에 발맞추어 연도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누적 관리, 배출량 검증 등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활동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조직경계 확인, 배출원별 데이터 수집,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계산의 절차를 의미



[양호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준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누적 관리 및 분석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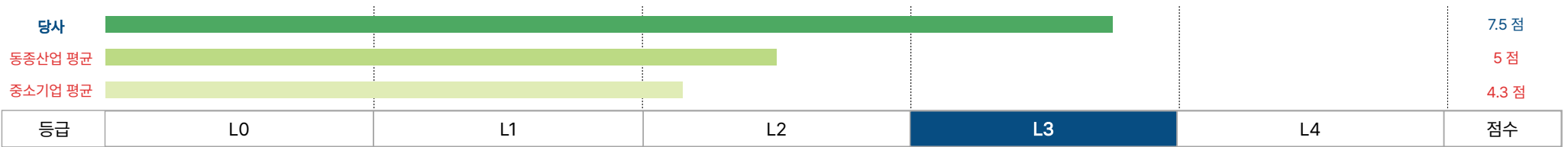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또는 공개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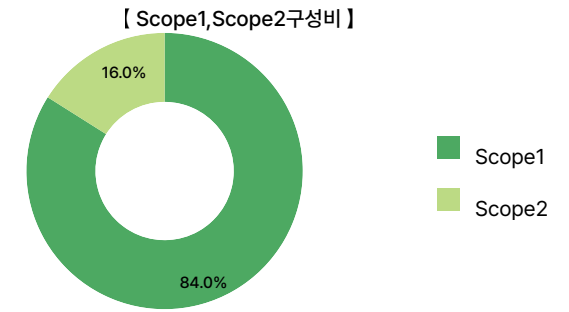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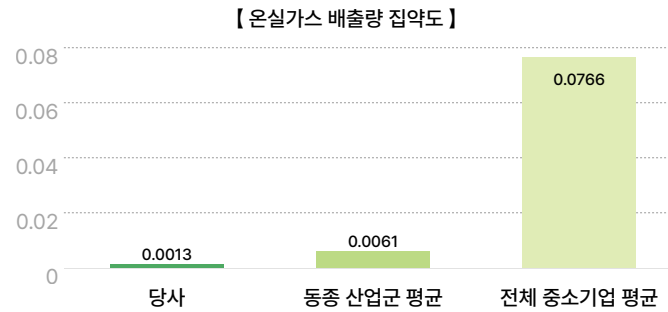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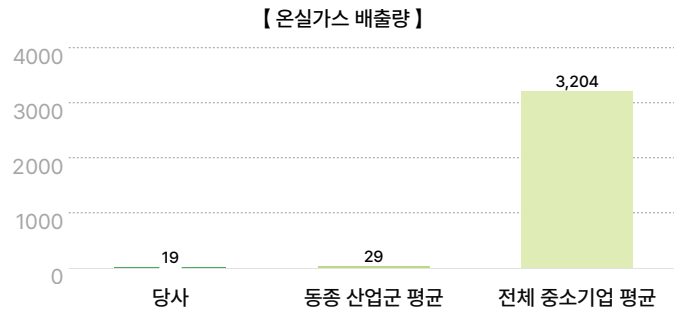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배출량 정보를 공시하고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필요시 데이터의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한 제3자 검증을 수행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배출량 정보를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표준에 기반한 검증 성명서를 획득하여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의 Peer Group 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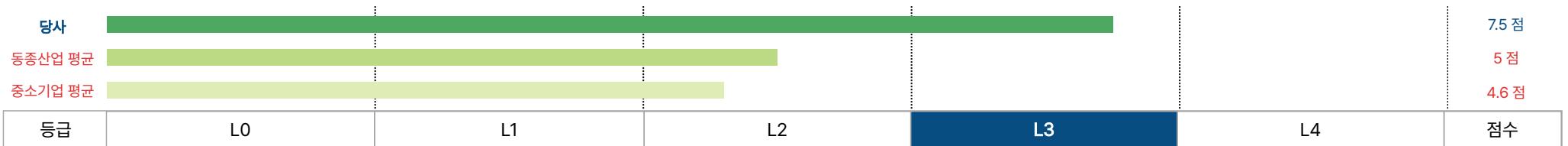


추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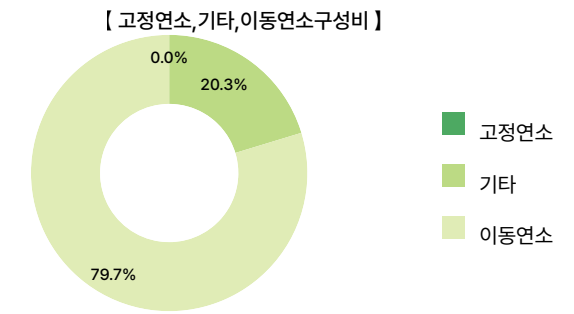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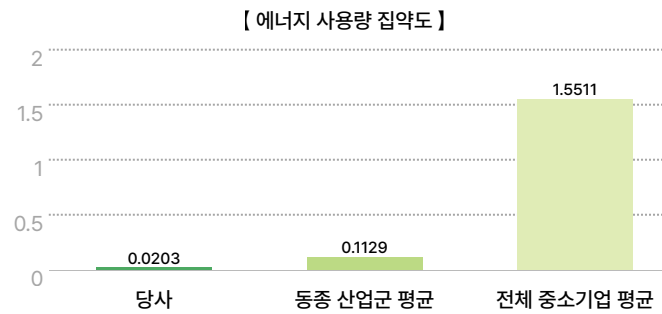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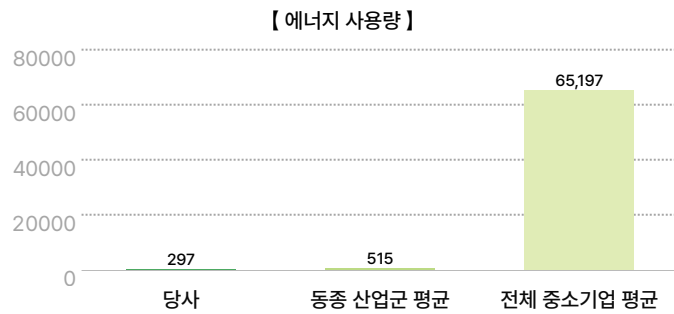
2025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013 tCO₂eq이며, 매출액 대비 집약도는 0.0013 tCO₂eq/백만원입니다. 귀사가 속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연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립하고 저감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의 Peer Group 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에너지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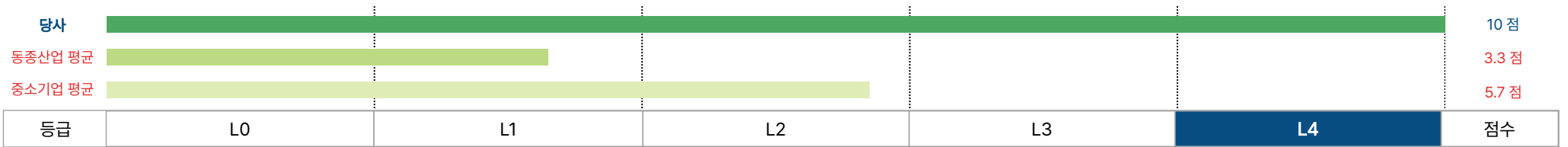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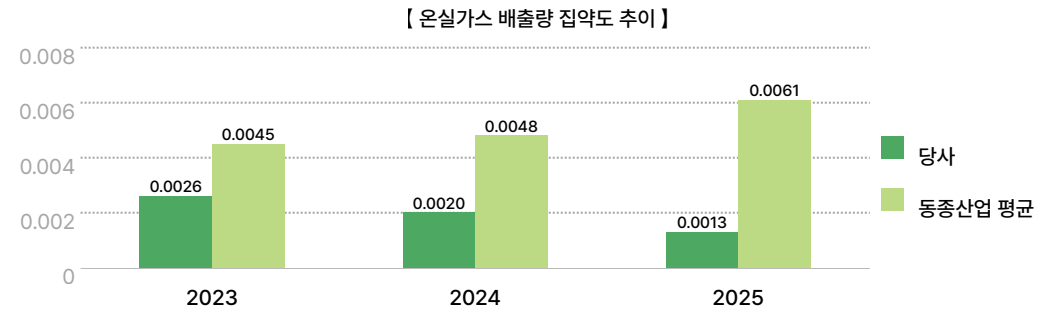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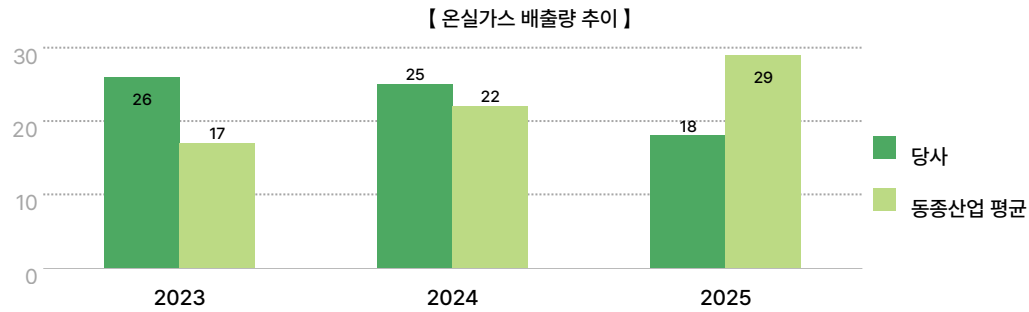
2025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97.71 GJ이며, 매출액 대비 집약도는 0.0203 GJ/백만원 수준입니다. 귀사가 속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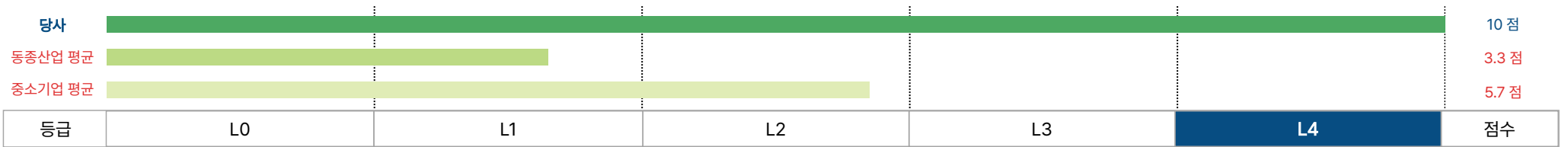


추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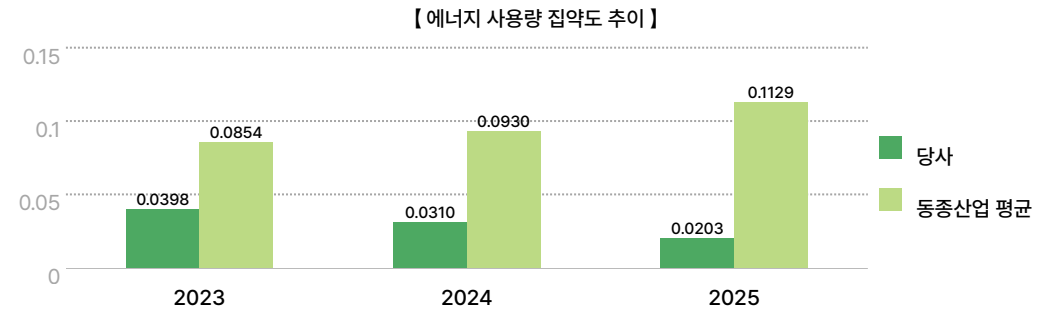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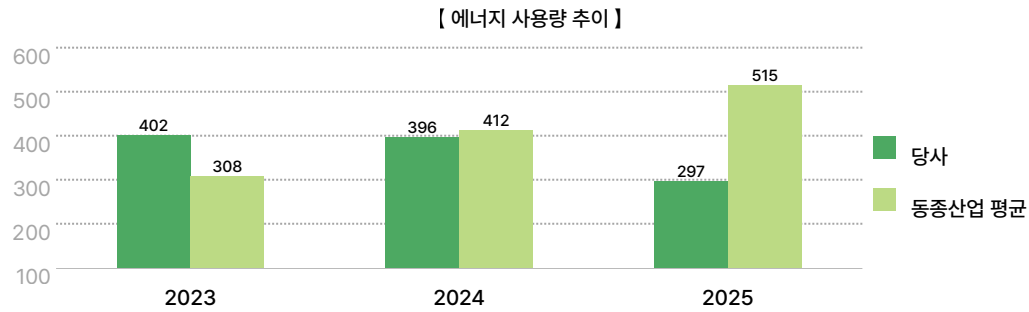
업무용 차량 감소로 인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매출액 기준, 단위: tCO2eq/백만원)가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43.7% 하락하여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 수준의 감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별도의 감축 활동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에너지 사용량 감축



추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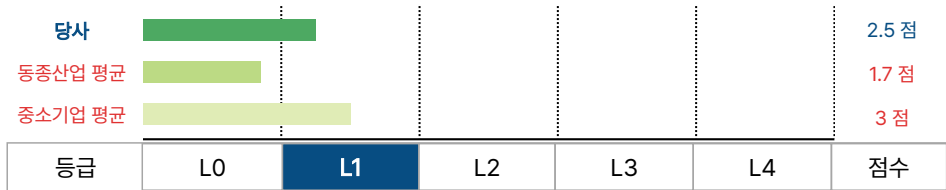
업무용 차량 감소로 인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 집약도(매출액 기준, 단위: GJ/백만원)가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42.6% 하락하여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에 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바랍니다.

이슈명 : 수자원

● 용수 관리

용수 관리 정책, KPI, 목표/계획 수립, 감축 활동 실시, 사용량 모니터링 등 용수 관리 체계를 통해 수자원을 보호하는지
용수 관리 정책, KPI, 목표/계획 수립, 감축 활동 실시, 사용량 모니터링 등 용수 관리 체계를 통해 수자원을 보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공장에서 사용되는 물은 크게 취수, 사용, 배출의 단계를 거치며 용수는 그 중 사용 단계의 모든 물로, 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등을 포함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용수 사용량 모니터링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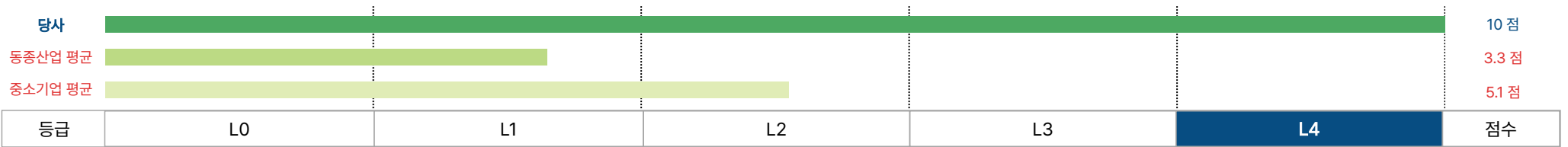
용수 관리 정책 보유
용수 관련 KPI 보유
용수 사용량 감축 목표 수립
용수 사용량 감축 활동 실시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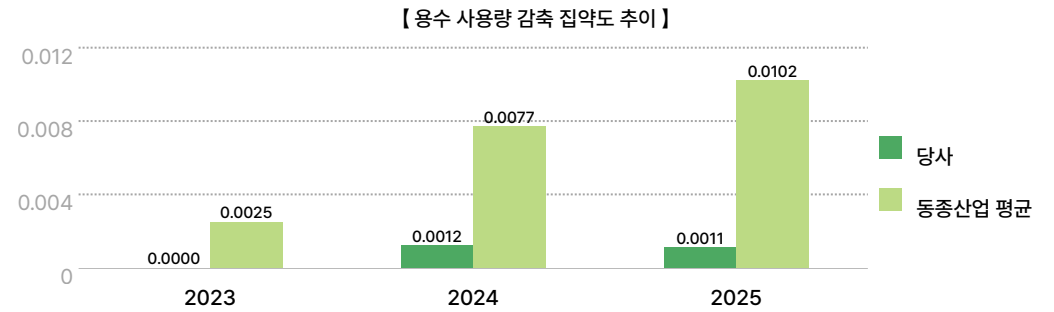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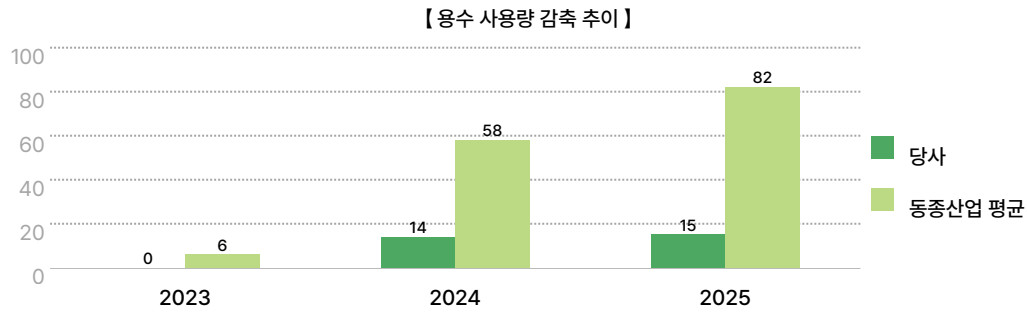
용수 사용량 모니터링을 넘어선, 정책수립, KPI, 목표/계획 수립, 감축 활동 실시 등 용수 관리 체계 수립을 권장합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 사용량 증감 요인을 분석하고 저감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사용량 감축

용수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용수 사용량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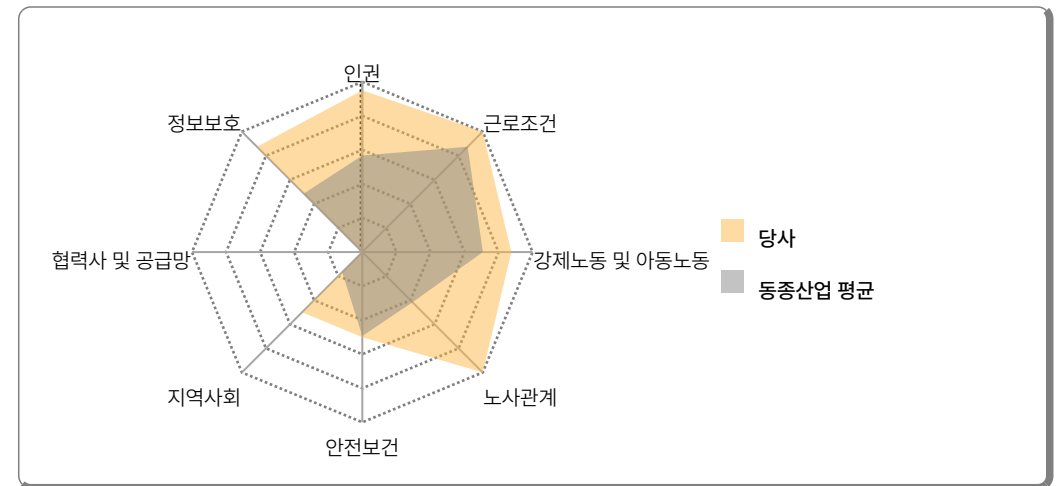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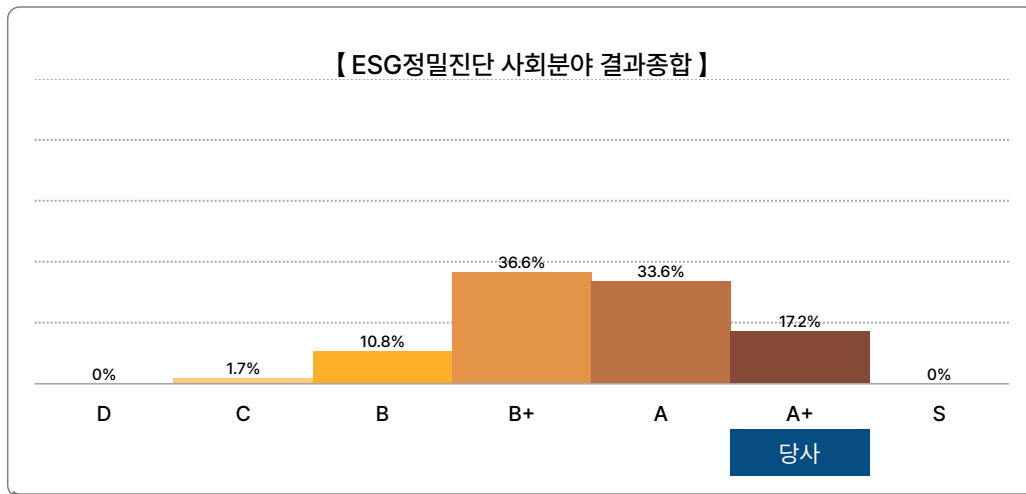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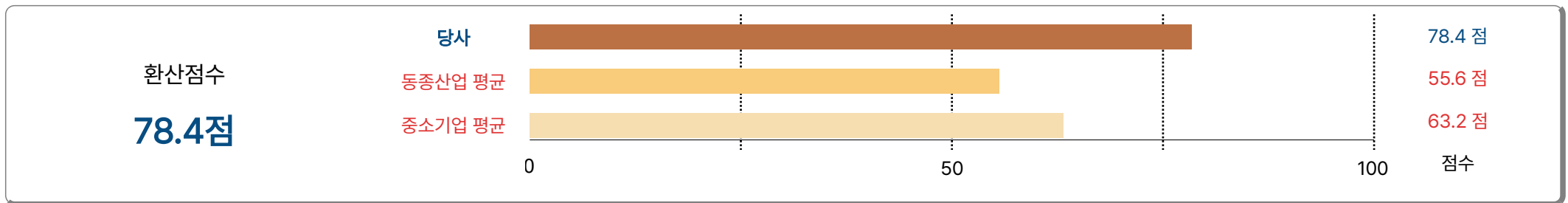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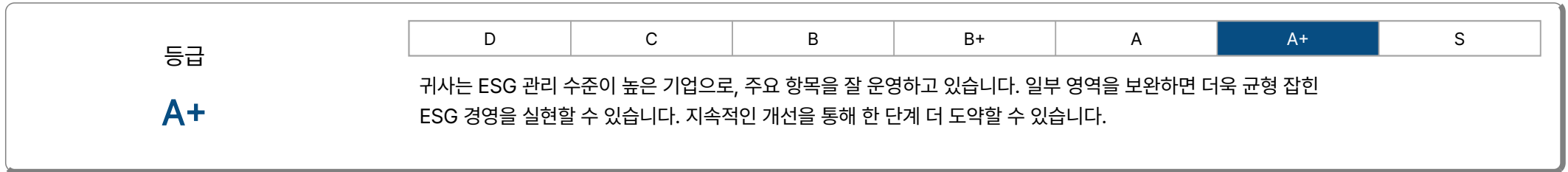
추가 의견

총 용수 사용량 집약도(매출액 기준, 단위: Ton/백만원) 평가 결과 직전년도 대비 용수 사용량이 8.6% 하락하여 개선되었습니다. 용수 사용량 감축 목적으로 절수기 설치 등 감축 활동을 조사·발굴하여 시행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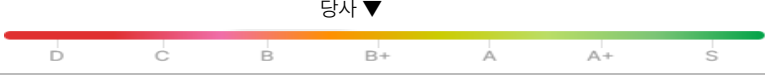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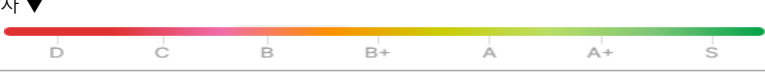
3. ESG 분야별 평가 결과

사회(SOCIAL)

평가 종합



■ 이슈별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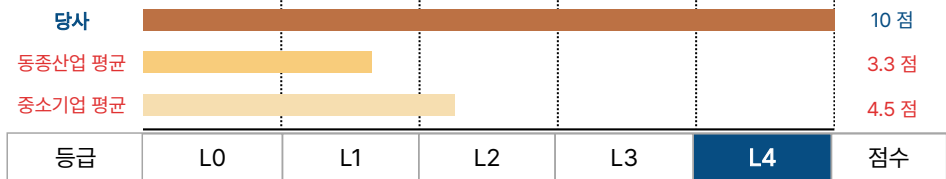
이슈	이슈별 주요 내용	Low ← 등급 → High	점수 (100점)	개선필요지표
인권	기업 활동 전반에서 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 권 존중·보호 보장을 위한 체계		95.0	
근로조건	근로자 임금, 근무시간, 복지 등 기본 노동 환경과 적정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		100.0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사업장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발생 방지 를 위한 예방·관리 정책		87.5	
노사관계	노동자와 경영진 간 소통·협력 및 분쟁 해 결 체계		100.0	
안전보건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사고 예방 및 건 강 보호 조치		50.0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안전보건 인증
지역사회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주민 상생을 위한 지원 활동		50.0	
협력사 및 공급망	협력사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 성 관리 체계		0.0	협력사 리스크관리
정보보호	기업 보유 정보 및 고객 개인정보의 안전 관 리와 법규 준수 체계		87.5	

■ 사회분야 이슈별 상세 평가

이슈명 : 인권

● 인권 정책

기업이 지지하는 인권 원칙과 인권 침해 구제 조치를 명시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인권 보호 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정책 수립
정책 요건 완전 충족
정책 대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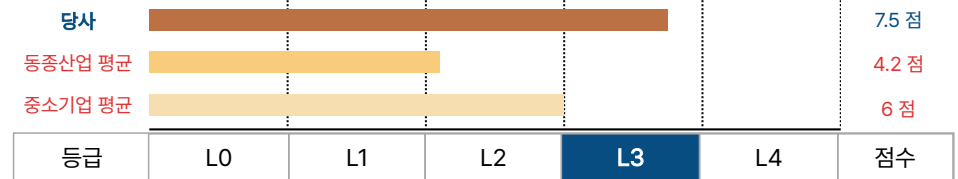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인권 이슈 관리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문서화된 인권정책은 기업의 의지 명확화 및 신뢰 확보에 중요합니다. 기업이 지지하는 인권 원칙과 인권 침해 구제 조치를 명시한 인권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여 인권 보호 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현재의 노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 교육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교육을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중 일부 교육 실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원 교육 실시
법정의무교육 이수 계획 수립 및 준수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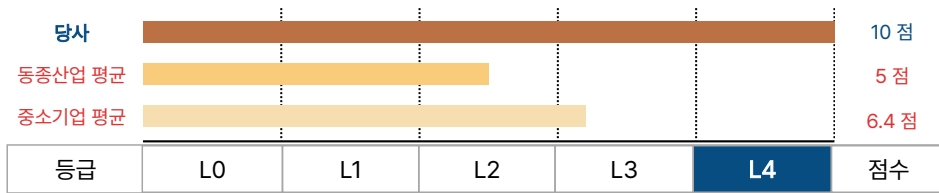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 교육 계획 수립 및 준수

[추가의견]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원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점은 우수합니다. 향후 인권 경영 고도화를 위해 법정 교육 외 추가 교육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인권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연간 인권교육 심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리스크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 교육 세션을 정례화하여 운영하시길 권고합니다.

● 고충처리제도

고충 접수 채널 운영, 담당자 지정, 고충처리 절차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자 고충 해결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을 위해 고충 신고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절차에 따라 고충을 정당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고충 접수 채널 운영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고충처리 절차 보유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고충 신청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고충사항의 처리 및 기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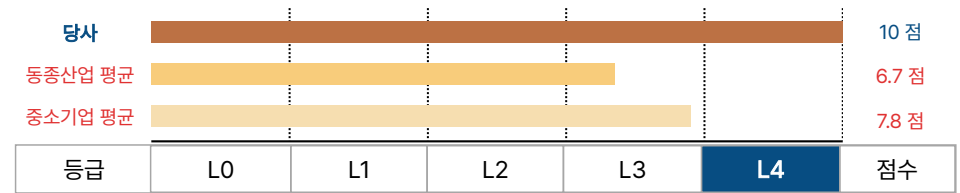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고충 접수 채널 운영, 담당자 지정, 고충처리 절차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자 고충 해결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을 위해 고충 신고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절차에 따라 고충을 정당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노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괴롭힘 금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적 업무지시 및 폭언, 기강잡기, 학대, 체벌, 강압,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괴롭힘 행위 금지 규정/지침 보유
괴롭힘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담당자 지정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정기적 실시
괴롭힘 행위 조사 절차 및 가해자 조치 방안 수립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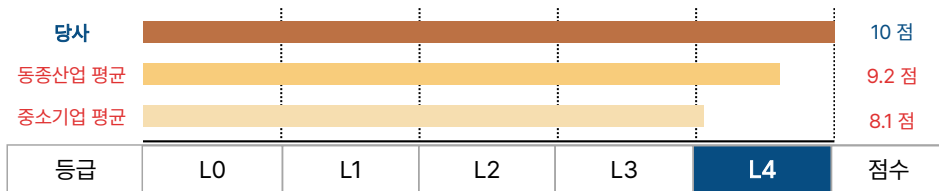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적 업무지시 및 폭언, 기강잡기, 학대, 체벌, 강압,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현재의 관리체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 차별 금지

기업이 근로자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19개 사유에 따라 채용, 임금, 교육, 승진, 퇴직 등의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차별 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모집 및 채용에서 차별 금지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 금지
교육·훈련에서 차별 금지
배치·전보·승진에서 평등한 기회 보장
퇴직·해고·정년에서의 차별 금지
잠재적 차별대상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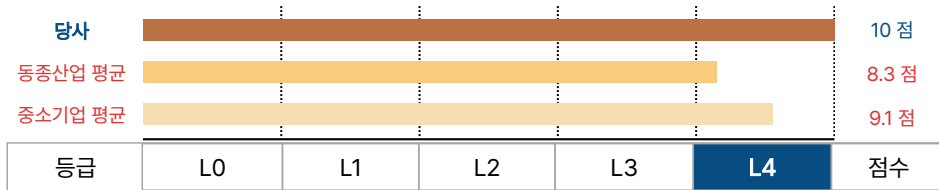
[추가의견]

인권헌장과 취업규칙 확인을 통해 근로자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19개 사유에 따라 채용, 임금, 교육, 승진, 퇴직 등의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차별 받지 않는 근로 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슈명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준수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공휴일 및 유급휴일, 병가 및 출산휴가, 근태 기록 관리 등 근로자의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법정근로시간 준수
법령에 따른 휴식 시간 제공
공휴일 및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병가 및 출산휴가 제공
개인별 근로시간 현황 기록 및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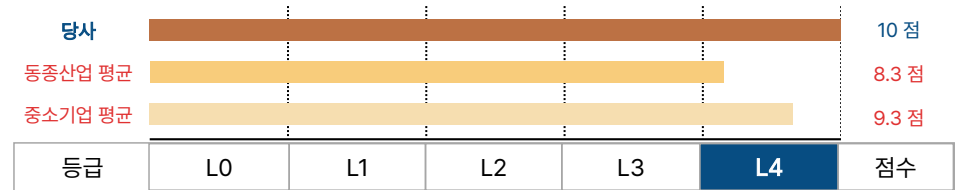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공휴일 및 유급휴일, 병가 및 출산휴가, 근태 기록 관리 등은 근로자의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근로시간기록부,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별 출퇴근 시간(근로시간) 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이 요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및 보상

최저임금 준용, 정기적 임금 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법적 준수 등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임금제도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지정 날짜에 임금 적시 지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통상임금 50%~100% 가산 지급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 금지
급여명세서에 법령 규정 항목 모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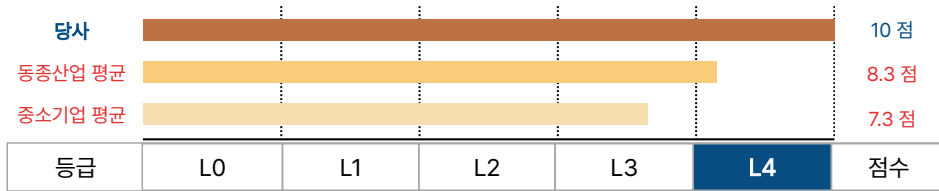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최저임금 준용, 정기적 임금 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급여명세서 법적 준수 등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임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복리후생 프로그램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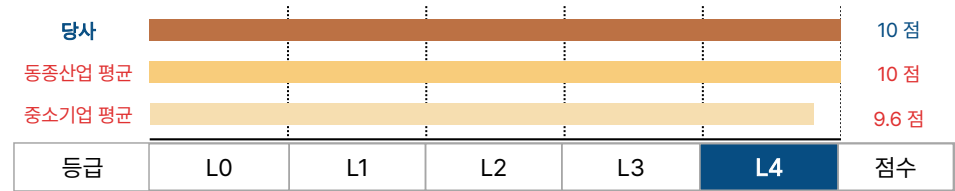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운영중인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 점검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 노력을 지속하시길 권장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며, 관련 국제 규제 및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개선사항]

모든 형태의 입사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에 법령 규정 항목 모두 명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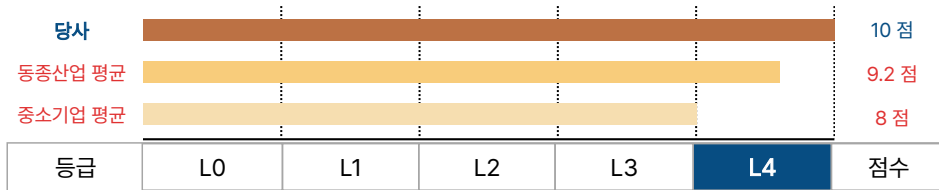
[추가의견]

모든 입사자와 법정 필수 항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체계는 잘관리되고 있습니다. 현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표준 양식의 연 1회 정기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슈명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 강제노동 금지

기업이 채용 비용 전가, 신분증 원본 보관, 이동의 자유 제한, 초과근로 강제, 근로 관계 종료 제한 등 강제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채용 비용 근로자에 부담 전가 금지
신분증 원본 보관 금지
근로자 이동의 자유 제한 금지
초과근로 강제 금지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한 자유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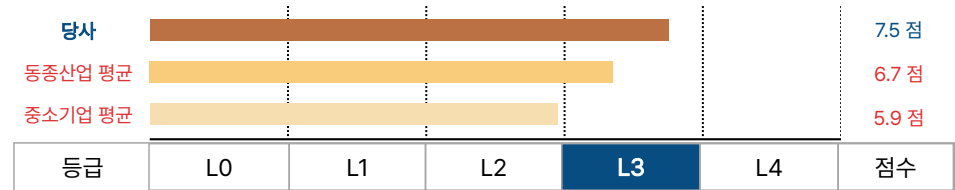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인터뷰 및 증빙자료를 통해 채용 비용 전가 및 신분증 원본 보관 금지, 이동의 자유 보장 등 강제노동 방지 원칙을 충실히 이행 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취업규칙 내 강제노동 금지 세부 조항을 명문화하고, 전 임직원 대상 인권 교육 정례화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운영하시길 권장합니다.

● 아동노동 금지

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연소자(만 18세 미만) 채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 최저 고용 연령(만 15세 미만)을 준수하며, 연소자에게 초과근로, 야간·휴일근로 및 유해·위험 작업을 부여하지 않고, 아동노동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의 연소자(만 18세 미만) 확인 절차 수립
국가 최저 고용 연령 미만(만 15세 미만) 근로자 미고용
연소자 고용 시, 초과 혹은 야간/휴일근로 금지
연소자 고용 시, 유해·위험한 작업 미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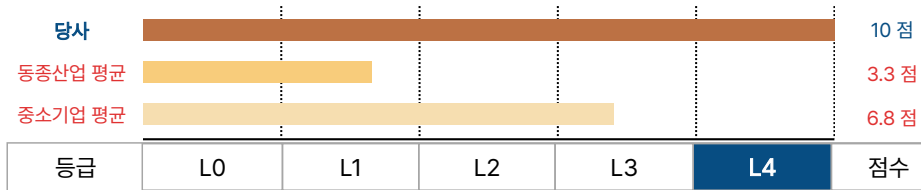
[추가의견]

취업규칙, 인권헌장에 아동노동 금지 관련하지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내에서 아동노동을 인지했을 경우 조치 절차는 부재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치 절차 예: 아동 발견 사실 보고(인사팀장/노무팀장 등) → 조사 및 아동 면담 → 의료 및 안전 확인 → 채용 취소발령 및 보호 조치 → 법적 조치 및 관련 보호 기관 보고

이슈명 : 노사관계

● 노사 소통 채널

노동자와 사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나누고, 사용자 측이 노사간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소통 창구 도입 협의 중
노사간 소통 창구 운영
노사간 정기 회의 개최
노사간 정기 회의를 통한 결정사항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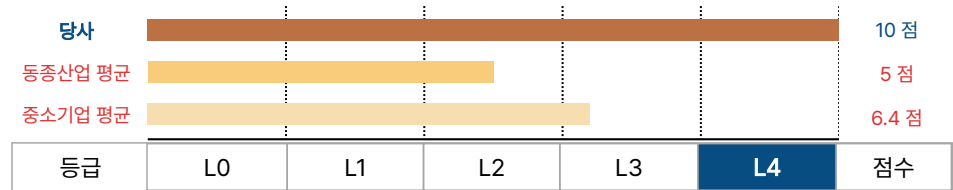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노동자와 사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나누고, 노사간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3권 보장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근로 3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근로 3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명문화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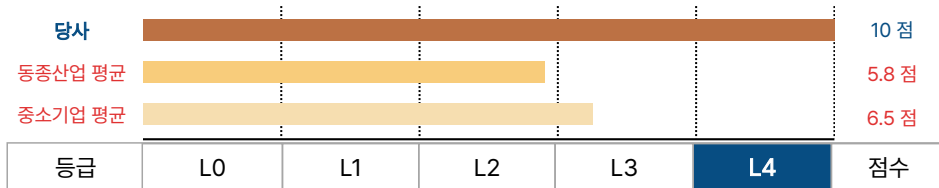
[추가의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지속 유지되도록 하여 노사 간 갈등 예방과 권리 보호가 유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명 : 안전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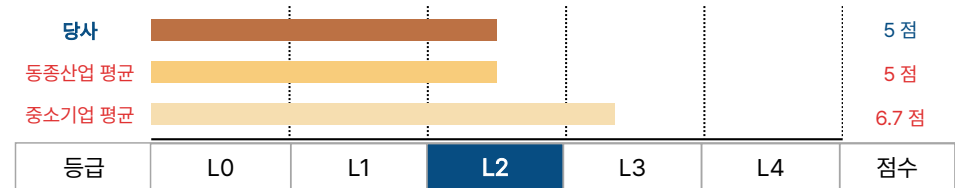
●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KPI와 목표 설정, 성과 모니터링, 전문 인력·조직 운영, 예산 수립 및 집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절히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 안전보건 관리 활동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관리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비치 및 교육,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KPI 보유
안전보건 목표 수립
안전보건 성과 모니터링
안전보건 예산 수립 및 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및 위원회 보유

[개선사항]

[추가의견]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숙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ISO 45001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제적 예방 관리 역량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환류 프로세스 내재화가 요구됩니다.

[양호사항]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주기적 작업환경측정 실시
화학물질의 MSDS 비치 및 취급자 교육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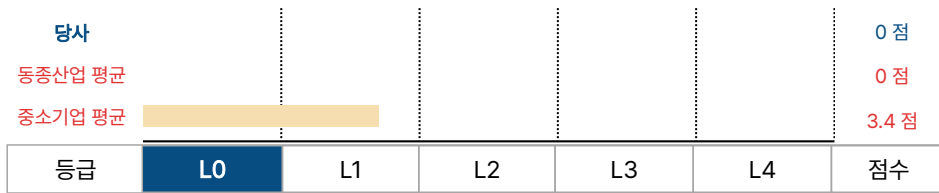
IT업 특성상 중대 유해·위험설비 및 화학물질 취급 위험은 낮으나, 위험성평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공간, VDT 작업, 전기·화재, 서버실, 장시간 근로 등 IT업무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 및 담당자 지정 기록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사항]

안전보건관계자 평가·관리 실시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 안전보건 인증

안전보건 인증(ISO45001, KOSHA-MS) 보유 여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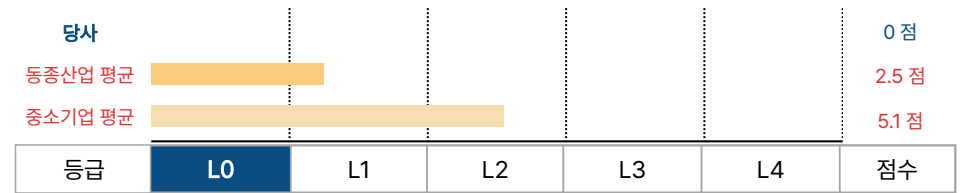
인증 심사 진행 중
안전보건 인증 취득

[추가의견]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제 또는 국내 규격에 따른 안전보건 인증(ISO45001, KOSHA-MS)을 취득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 평가기준·절차 수립,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마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해·위험작업 교육 제공·지원·확인 여부를 검토하는 지표



[양호사항]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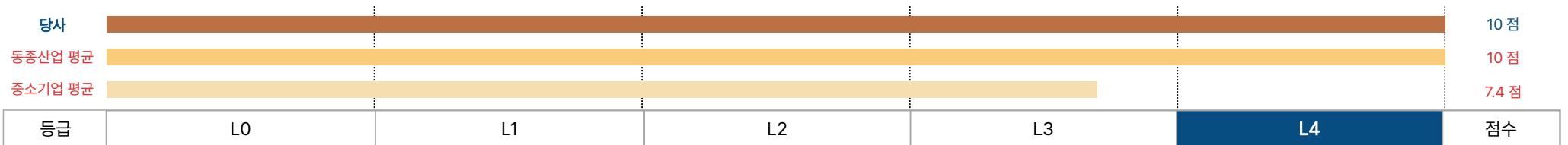
수급인의 안전보건 평가기준 · 절차 수립
수급인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마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제공·지원·확인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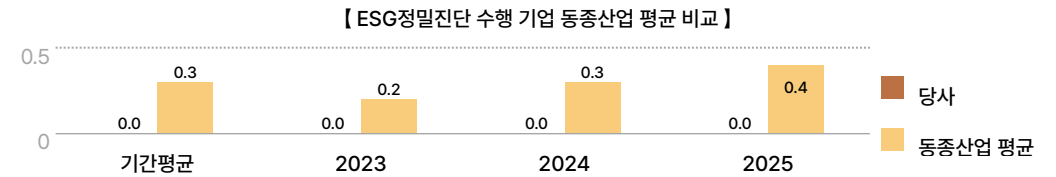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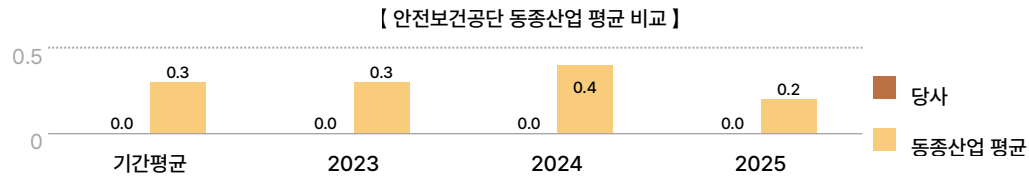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 평가기준/절차 수립,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마련, 안전보건총괄(or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해/위험작업 교육 제공/지원/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의 Peer Group 내 수준 및 무재해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산업재해율(%)



[양호사항]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산업 평균 미만입니다.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개선사항]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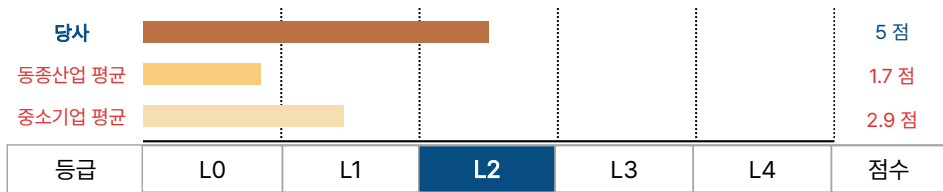
산업재해율은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귀사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우수한 안전보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재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슈명 : 지역사회

●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공헌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업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사회



[양호사항]

산학협력제도
기부(현금, 현물 제공)

[개선사항]

협업체 구축 및 MOU 통한 지역사회 기여 활동
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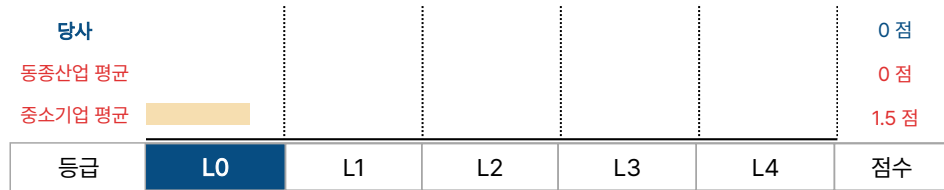
[추가의견]

산학협력 및 기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은 긍정적이나 향후 지자체와 사회공헌 MOU를 체결하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내 봉사단 운영 규정 수립을 통한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정례화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길 권고합니다.

이슈명 : 협력사 및 공급망

● 협력사 리스크관리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행동규범 배포,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 확보, 협력사 ESG 정기적 점검, 협력사 선정 시 ESG 경영 실천 결과 고려, ESG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개선사항]

행동규범 배포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 서명 확보
 협력사 대상 정기적 ESG 점검 활동 수행
 협력사 선정 및 계약 결정 과정에 ESG 경영 실천 여부 고려
 ESG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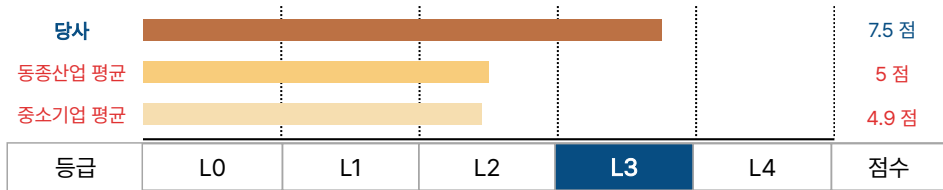
[추가의견]

ESG관리 차원에서 하위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행동규범 배포(이메일 내역, 배포 증빙 문서 관리),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 확보, 협력사 ESG 정기적 점검(체크리스트 결과지, 점검 설문지 등), 협력사 선정 시 ESG 경영 실천 결과 고려, ESG 교육 프로그램 제공(교육일지, 현장 사진 등 증빙 문서화) 등의 협력사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권장합니다.

이슈명 : 정보보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보유,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정보보호 시스템 보유, 물리적 보안 대책 마련, 정보보호 인증 획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이 다루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이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보유
임직원 교육 연 1회 이상 정기적 실시(법정의 무 교육 포함)
정보보호 시스템 보유
물리적 보안 대책 마련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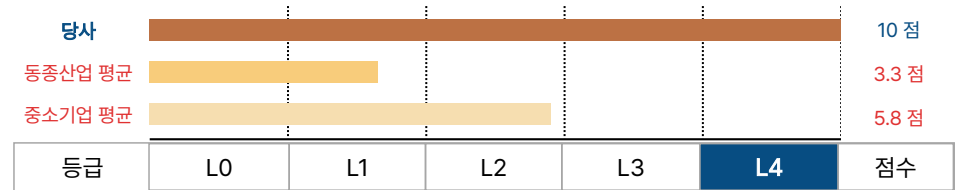
정보보호 인증 획득

[추가의견]

현재의 정보보호관리체계도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보안 수준 향상(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로 사고 예방 가능), 신뢰도 확보(고객, 파트너, 투자자에게 보안에 대한 신뢰 제공), 법적 리스크 감소(규정 준수로 인한 벌금이나 평판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자율적인 ISMS, ISMS-P 인증 등 관련 인증 취득을 권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 전에 정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양호사항]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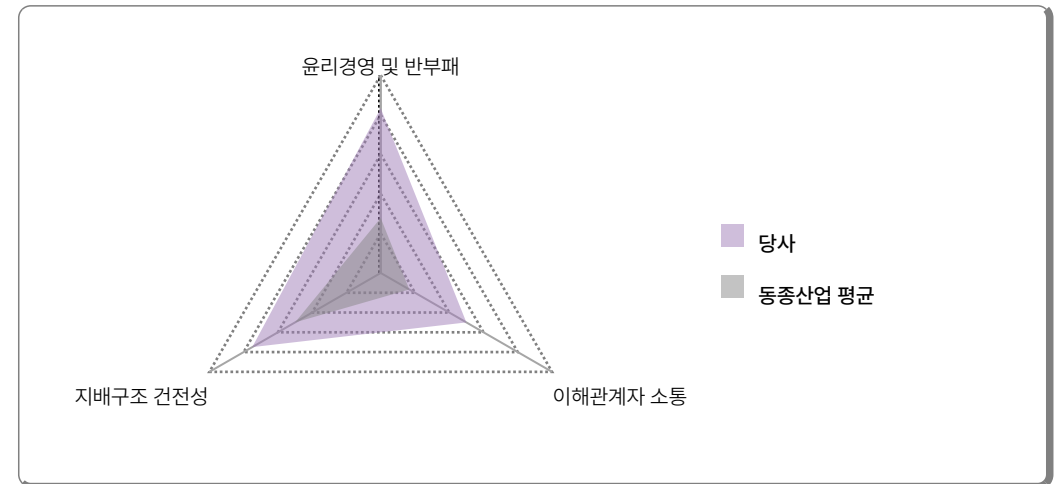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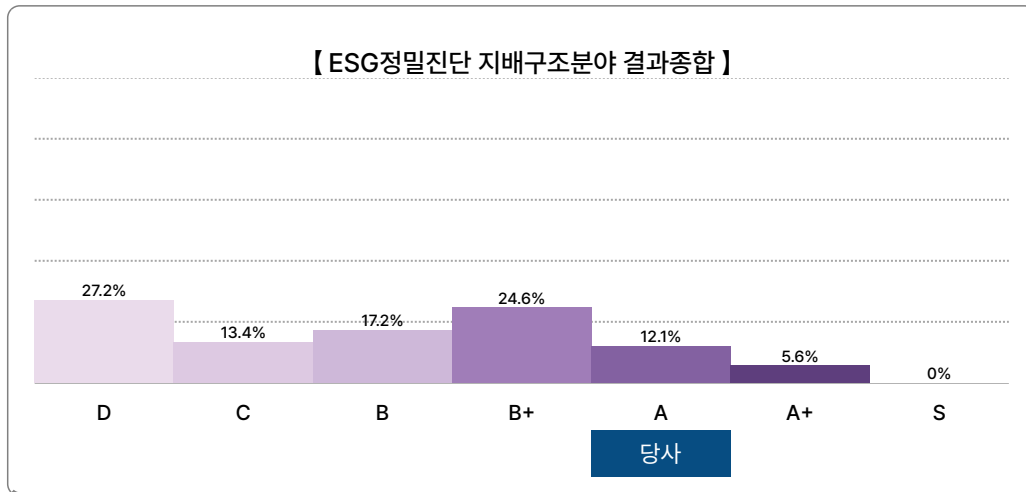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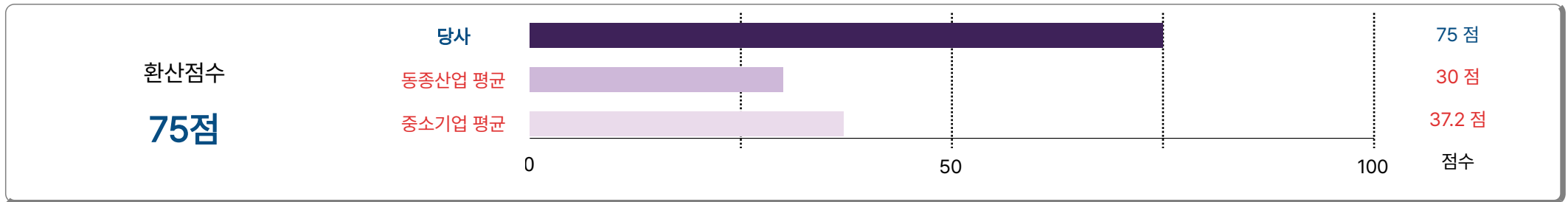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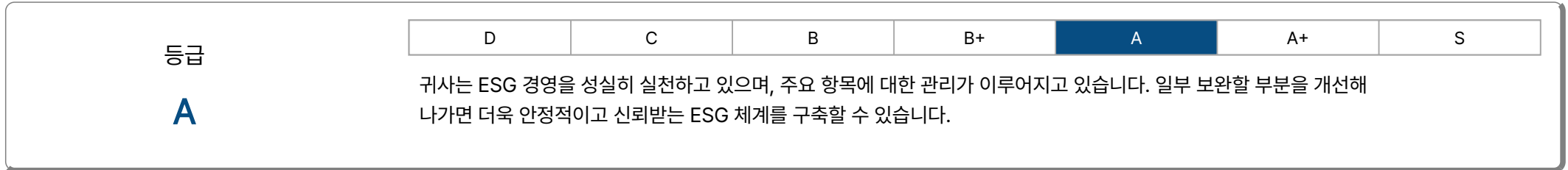
[추가의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 전에 정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를 충실히 운영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ESG 분야별 평가 결과

지배구조(GOVERNANCE)

평가 종합



■ 이슈별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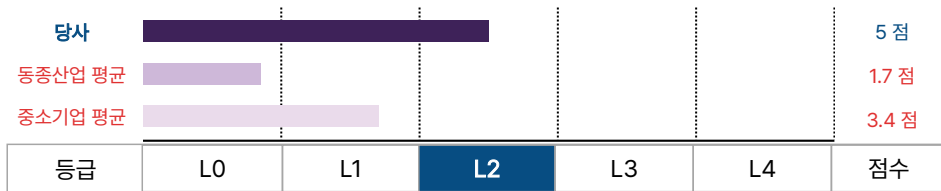
이슈	이슈별 주요 내용	Low ← 등급 → High	점수 (100점)	개선필요지표
윤리경영 및 반부패	기업 윤리 준수와 부패 방지 보장을 위한 내부 통제 및 관련 정책	D C B B+ A A+ S 당사 ▼	83.3	
이해관계자 소통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한 공개	D C B B+ A A+ S 당사 ▼	50.0	
지배구조 건전성	투명한 의사결정과 내부 통제 확보 위한 운영 체계	D C B B+ A A+ S 당사 ▼	75.0	

■ 지배구조분야 이슈별 상세 평가

이슈명 : 윤리경영 및 반부패

● 윤리경영 정책 내재화

비윤리적 행위 방지 및 투명 경영 실현을 위해 정책, 담당조직, 교육 등 측면에서 구체적인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윤리경영 정책 수립
윤리경영 정책 외부 공개
윤리경영 담당 조직 지정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 교육 실시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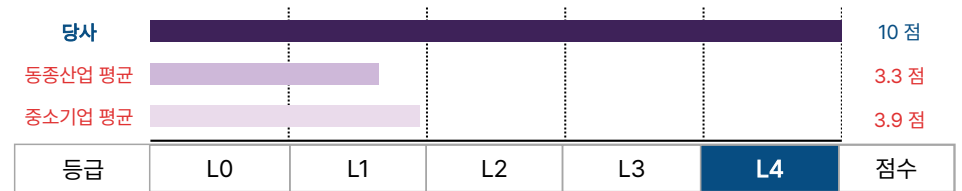
윤리경영 정책에 대한 임직원 서명
윤리경영 정책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 제공

[추가의견]

윤리경영 정책 수립 및 외부 공개, 전담 조직 운영과 정기 교육 실시를 통해 투명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우수합니다. 다만 정책 내재화를 위해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징구하고,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정 및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윤리 문화를 확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 부패 및 불공정거래 방지 활동

윤리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반부패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민감거래에 대한 신고 절차 수립을 비롯해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별도 규정 보유,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민감 거래 신고 절차 마련
공정거래 관련 내부 규정/지침 보유
협력사 및 고객사와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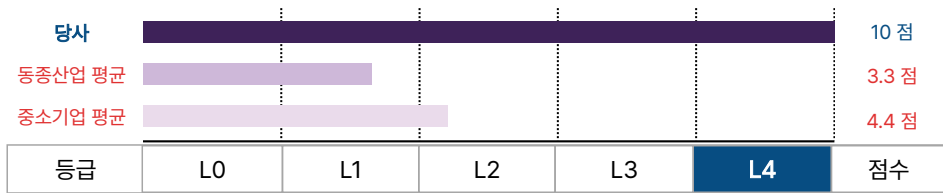
[개선사항]

[추가의견]

윤리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반부패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민감거래에 대한 신고 절차 수립을 비롯해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별도 규정 보유,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등 관리체계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 윤리준법 신고제도

기업의 윤리준법 보장을 위한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윤리준법 위반 행위 관련 신고 및 제보 채널 보유
 윤리준법 위반 행위 관련 대응 및 처리 절차 보유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익명성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금지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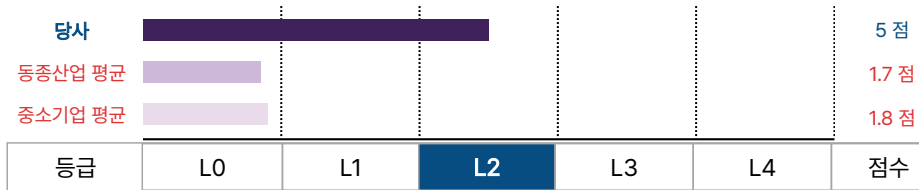
[추가의견]

당사는 기업의 윤리준법 보장을 위한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제도를 유지 보완하면서 기업의 윤리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슈명 : 이해관계자 소통

● ESG 정보 공시

기업이 정기적으로 검증된 ESG 정보를 공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양호사항]

ESG 정보 공시 준비 중
ESG 정보 공시

[개선사항]

검증된 ESG 정보 공시
정기적으로 검증된 ESG 정보 공시

[추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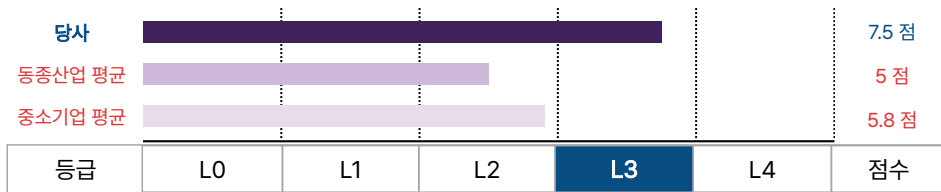
ESG 주요 Data(환경, 사회, 윤리 관련 정보 등) 중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통해 공개(주기적 업데이트)하는 것도 충분하나, 현재 작성중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독립된 검증기관 또는 검증인이 명시된 검증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작성/공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슈명 : 지배구조 건전성

● 경영 건전성

기업의 대여금 현황, 경영진 내 특수관계인 보유 현황, 경영자의 처벌이력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경영 건전성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지표에서는 재무적 안정성과 투명한 경영체계를 평가



[양호사항]

대여금(가지급금) 미보유
감사인 또는 감사 조직 보유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최근 3년 이내 CEO 및 임원진의 횡령 또는 배임 이력 전무

[개선사항]

등기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추가의견]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부족, 재무적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부패 및 비윤리적 행동에 더 취약합니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지식, 경험, 능력, 성별의 조화를 고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o-Be 이행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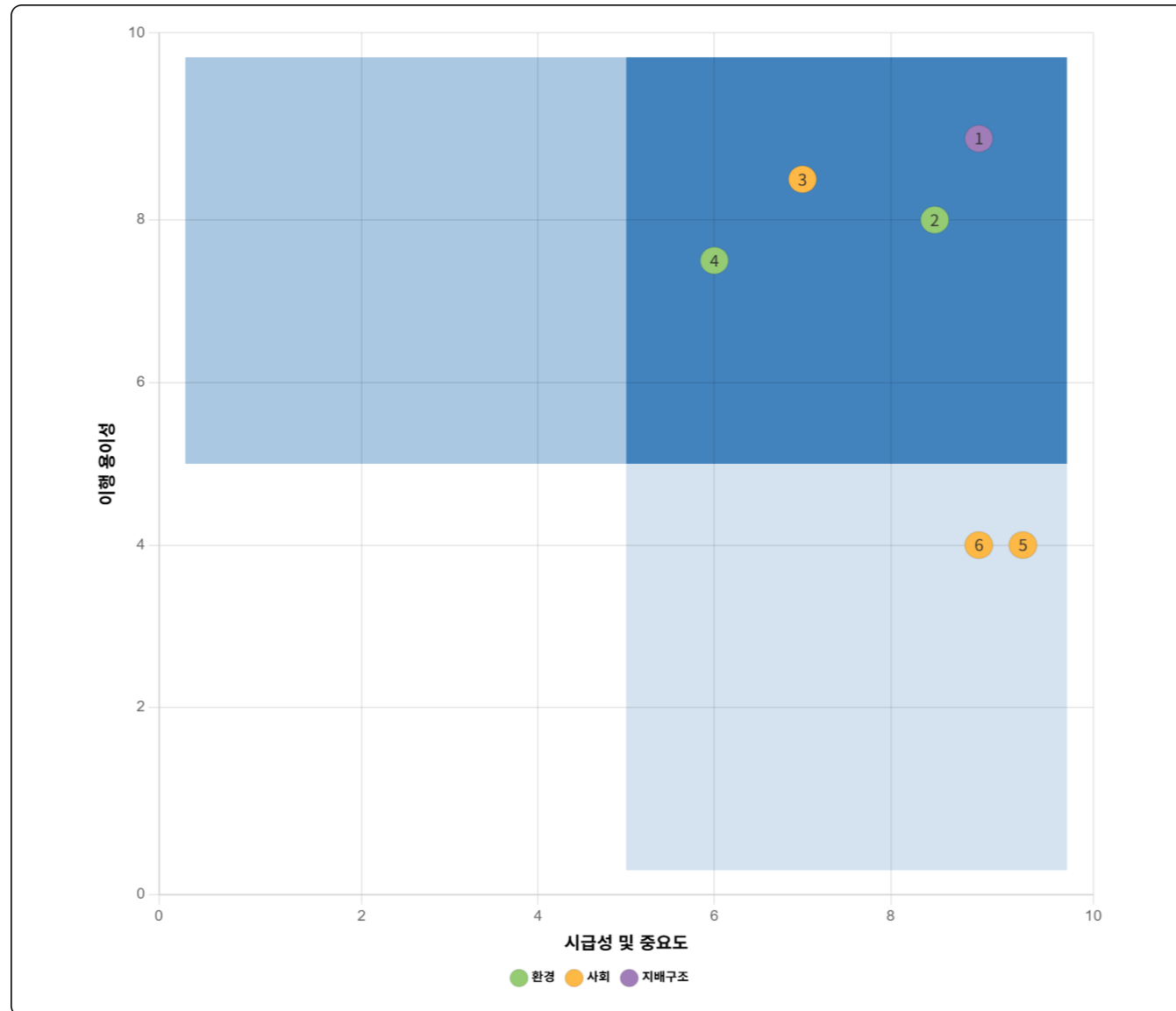
4. To-Be 이행가이드

ESG 정밀진단 결과

영역별 평가지표 등급 분포도

	L0	L1	L2	L3	L4
환경(E) (10/37)		용수 관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 감축 용수 사용량 감축
사회(S) (22/37)	안전보건 인증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협력사 리스크관리		안전보건 관리 활동 지역사회 프로그램	인권 교육 아동노동 금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권 정책 고충처리제도 괴롭힘 금지 차별 금지 근로시간 준수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프로그램 근로계약서 강제노동 금지 노사 소통 채널 근로 3권 보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율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배구조(G) (5/37)			윤리경영 정책 내재화 ESG 정보 공시	경영 건전성	부패 및 불공정거래 방지 활동 윤리준법 신고제도

■ 개선과제 관리 우선 분포도



Quick Win

- 1-ESG 정보 공시
- 2-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 3-지역사회 프로그램
- 4-용수 관리

단기

중장기

- 5-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6-협력사 리스크관리

■ 개선과제 리스트

순번	개선과제명	관리우선도	적용지표	개선과제 설명	해결방안							
1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QuickWin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수립	☒	전략	☒	정책	☐	조직	☐	프로세스
2	수자원 관리	QuickWin	용수 관리	용수관리 정책 수립	☐	전략	☒	정책	☐	조직	☒	프로세스
3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QuickWin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실시	☐	전략	☐	정책	☒	조직	☒	프로세스
4	ESG 정보 공시	QuickWin	ESG 정보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전략	☒	정책	☒	조직	☒	프로세스
5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중장기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도급업체 안전관리	☐	전략	☒	정책	☒	조직	☒	프로세스
6	협력사 리스크관리	중장기	협력사 리스크관리	협력사 ESG리스크 관리	☐	전략	☒	정책	☒	조직	☒	프로세스

IBK 정밀진단 ESG 평가등급 체계

ESG 평가등급 설명

등급	의미
S 등급	귀사는 ESG 경영을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 안정적인 ESG 경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A+ 등급	귀사는 ESG 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으로, 주요 항목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역을 보완하면 더욱 균형 잡힌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A 등급	귀사는 ESG 경영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ESG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B+ 등급	귀사는 ESG 관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간다면 ESG 경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B 등급	귀사는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면 ESG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C 등급	귀사는 ESG 경영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점진적인 개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핵심 요소들을 차근차근 정비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ESG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D 등급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면 ESG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꾸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제등급 설명

등급	의미
우수	귀사는 주요 ESG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행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규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호	귀사는 ESG 규제 대응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면 더욱 견고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귀사는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ESG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흡	귀사는 일부 ESG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약	귀사는 ESG 규제 대응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기본적인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핵심 항목부터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pyright 2025 (IBK기업은행)

(보고서의 지적재산권)

본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 관련 정보 및 평가 방법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IBK기업은행 또는 공식적 취득 과정을 통해 제공된 기관 조직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보고서 및 포함된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무단 복제, 인용, 배포 등의 일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고서의 해석)

당사가 제공하는 ESG평가등급 및 점수는 ESG평가를 받는 피평가회사의 ESG 성과에 대한 분석 정보입니다. 본 보고서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투자 및 투자 포트폴리오 포함 가능성을 대변하거나 보충 또는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고서의 책임한계)

본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피평가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작성된 것이며, ESG 평가 등급 및 점수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게재 정보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지만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오류 및 누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본 보고서에 게재된 정보 또는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ibkesg779@ibk.co.kr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SG정밀진단 컨설팅 최종보고서

감사합니다